#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3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현정·김남근·정준호

김동아 • 박정현 • 이개호

서미화 • 박균택 • 황명선

이수진 · 신영대 · 전재수

박홍배 • 박 정 • 이건태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,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.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,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.

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 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와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납 통 신비, 체납 건보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.

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, 이동통신사업자,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 함(안 제75조제2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0조제3항 중 ""채권금융회사"라"를 ""채권금융회사등"이라"로 한다. 제72조제1항 중 "채권금융회사"를 "채권금융회사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채권금융회사는"을 "채권금융회사등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채권금융회사로부터"를 "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채권금융회사이"를 "채권금융회사등에"로, "채권금융회사는"을 "채권금융회사등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채권금융회사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채권금융회사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채권금융회사"를 "채권금융회사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채권금융회사"를 "채권금융회사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채권금융회사"를 "채권금융회사등이"로 한다.

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채권금융회사가"를 "채권금융회사등이"로 한다.

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"채권금융회사가"를 각각 "채권금융회사등이"로 한다.

제75조제2항에 제1호의2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제2호 또는 제3호"를 "제2항 제1호의2·제2호·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3까지"로 하며, 같 은 조 제4항 중 "채권금융회사는"을 "채권금융회사등은"으로 한다.

- 1의2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장학재단
- 3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- 3의3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)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채무조정 기본원칙) ①・	제70조(채무조정 기본원칙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	③
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	
자(이하 <u>"채권금융회사"라</u> 한	"채권금융회사등"이
다)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	<u>라</u>
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	
다.	<u></u>
제72조(채무조정의 절차) ① 위원	제72조(채무조정의 절차) ①
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	
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	
유가 없으면 이를 <u>채권금융회</u>	채권금융회사
<u>사</u> 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	<u>드</u>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	②
<u>채권금융회사는</u> 개인채무자의	채권금융회사등은
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	
야 한다.	
③ 위원회는 <u>채권금융회사로부</u>	③ <u>채권금융회사등으</u>
<u>터</u>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	로부터
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	
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	
• 의결하여야 한다.	
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	4

- 의·의결된 채무조정안을 <u>채권</u>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, <u>채권금융회사는</u> 그 채무조정안 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(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 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)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<u>채권</u>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 정된다.
-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## ⑦ (생략)

제73조(채무조정의 방법) 채무조 저 정은 <u>채권금융회사가</u>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제74조(채무조정의 효력) ① 제72 저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

	· <u>채권금</u>
<u> 융회사등에</u>	
채권금융회사등은	
5	
	-채권금
<u> 융회사등이</u>	
<u>.</u>	
<u>⑥</u>	
	· <u>채</u>
<u>권금융회사등</u>	
⑦ (현행과 같음)	
세73조(채무조정의 방법) -	
<u>채권금융회사등이</u>	
1. ~ 6. (현행과 같음)	
세74조(채무조정의 효력) (	1)

정안을 개인채무자와 <u>채권금융</u> <u>회사가</u>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 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 로 본다.

- ② <u>채권금융회사가</u>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 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 일하게 미친다.
- 제75조(신용회복지원협약) ① (생 략)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1. (생략)

<신 설>

2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	채권금융
	회사등이
	② 채권금융회사등이
제	75조(신용회복지원협약) ①
	(현행과 같음)
	②
	1. (현행과 같음)
	1의2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
	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
	<u> 장학재단</u>
	2. ~ 3. (현행과 같음)
	3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
	른 국민건강보험공단
	3의3.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
	<u>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</u>
	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
	자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 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
	조제1항에 따다 기간당신사업 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
	- /1조ェリー ~1662/11円二字

4.	(생	략)
т.	\ O	-1/

-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 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<u>채권금융회사는</u>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⑤ (생략)

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
신사업자를 포함한다)
4. (현행과 같음)
③ <u>제2항제1호의2·제2호·제3</u>
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
<u> 3까건</u>
<del>-</del> .
④ 채권금융회사등은
_

⑤ (현행과 같음)